
운영규정 개요

느티나무

목 차

1. 기관소개
2. 운영규정 개요
3. 종사자 근무 체계
4.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6. 시설의 규모 및 설비
7. 화재·영업·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현황
8.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 기관 소개

○ 기관 내부 게시 정보

- ◇ 운영규정 개요
- ◇ 교육자료, 보험가입증서
- ◇ 종사자 근무표, 프로그램 계획서, 식단표
- ◇ 입소자 목록 일정표, 일일 일정표
- ◇ 조직도 및 직원 현황, 시설 현황, 평면도, 화재 시 대피경로
- ◇ 직원 현황표, 노인학대 예방자료, 응급상황 대응지침, 자위소방대
- ◇ 요양보호사 윤리행동강령, 사생활 보호지침
- ◇ 입소자의 의무, 입소자의 권리, 비상연락망 체계도
-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기관의 특성

느티나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가정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 시 가정집과 같은 구조로 설계 및 건축하였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활동반경이 한눈에 파악되어 치매 어르신의 배회 및 낙상을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느티나무는 2015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13년, 2015년, 2018년 3회 연속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 우수사례

- 기관 및 시설장 표창

- ◇ 2013년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 2015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 ◇ 2015년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 2015년 전라북도지사 표창
- ◇ 2016년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 ◇ 2018년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청구 상담 봉사자
- ◇ 2021년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 우수 기관 선정
- ◇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청구 상담 봉사자
- ◇ 2022년 전주지방검찰청장 표창
- ◇ 2023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

- ◇ 2024년 국회의원 표창
- ◇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 청구 상담 봉사자

○ 홈페이지 및 밴드 운영

- <http://www.oldster.co.kr>
- <http://노티나무요양원.kr>
- <https://band.us/band/4822809>

○ 운영 목표

-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 케어 제공
- ◇ 직원들의 전문분야 교육을 통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 ◇ 치매에 관련된 사업과 공공의료 증진을 위한 사업실시
- ◇ 의료 서비스의 수준 및 노인의 편의를 위한 최고 서비스 제공
- ◇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운영규정 개요

1) 입소 정원 (운영규정 제4장)

- 정원 9명

2) 입소 계약 (운영규정 제5장)

- 입소 대상 : 장기요양인정 판정 1~5등급자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
- 계약 기간 : 입소일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 (등급 갱신 시 재계약).
-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운영규정 제9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 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

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 상 주의사항 (운영규정 제10장)

① 입소자는 시설물의 사용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망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산출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③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④ 생활실 배치의 경우 어르신들의 상태변화에 따라 시설이 임의로 방 배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1인실의 경우 상급침실료를 수납하는 경우 방 배정에 있어 보호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 ⑥ 상급침실료를 수납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상급침실을 타 입소자가 사용해야하는 경우 상급침실료는 징수할 수 없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운영규정 제11장)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② 입소자가 보호자 또는 개인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장기요양 기관 정보 ◆

- ▶ 기관명 : 느티나무
- ▶ 장기요양기관기호 : 1-45180-00078
- ▶ 급여종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지정일자 2010-09-16
- ▶ 전화번호 : 063)537-2051 / 팩스 063)537-2052
- ▶ 홈페이지주소 : <http://www.oldster.co.kr>
- ▶ 주소 : 전북 정읍시 정우면 금북길 18

3. 종사자 근무 체계

○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2026년 1월 1일 기준 직원 사항

번호	이름	직위	업무내용	근속연수
1	최*동	시설장	총괄	15년 2개월
2	장*아	간호조무사	간호 총괄	5년 5개월
3	이*근	요양보호사	복지팀(케어)	2년 2개월
4	김*예	요양보호사	복지팀(케어)	7개월
5	박*순	요양보호사	복지팀(케어)	4개월
6	장*자	조리원	복지팀(조리)	13년 9개월

☞ 주, 야간 근무일정은 월별 근무표에 표기함.

4.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등급 : 1, 2, 3, 4, 5

5.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구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수가	노인요양시설	93,070	86,340	81,5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4,590	69,210	63,800
비급여	상급 침실료	없음		
	식재료비	1식 3,000원 × 3식 × 30일 = 270,000원		
	간식비	1식 500원 × 30일 = 15,000원		
	이/미용료 등	실 비(미용실 이용 시)		
	병원 진료비, 약제비	실 비		

6. 시설의 규모 및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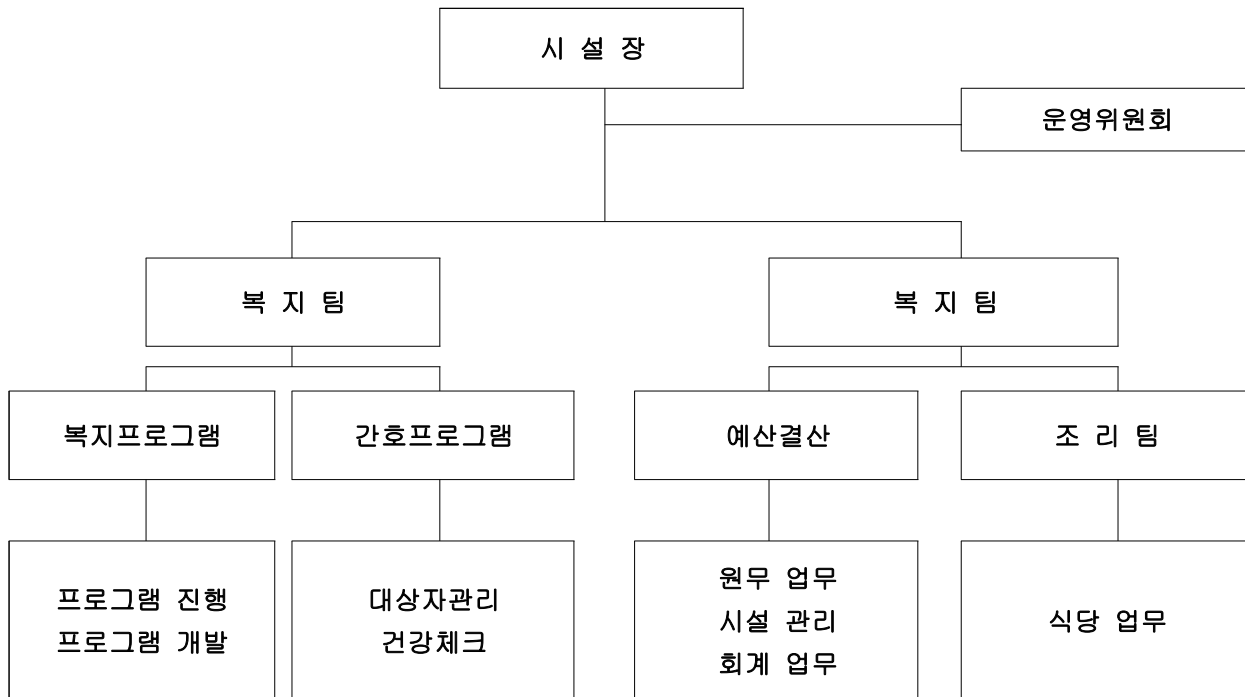
시 설 명	느 티 나 무	운영주체	개 인
시 설 장	최 갑 동	시설구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홈페이지	http://www.oldster.co.kr		
시설현황	대지면적 : 867m ² 건축면적 : 206m ² 연면적 : 199.50m ²		
	건폐율 : 23.77% 용적률 : 23.01%		
주 소	전북 정읍시 정우면 금북길 18		
전화번호	063-537-2051	팩 스	063-537-2052

비 고	호 실	정원	현원
정 원 안 내	행복실	1	1
	기쁨실	2	2
	희망실	3	3
	웃음실	3	3
	계	9	9

자원현황	후 원 자	30명	1명 감소
	자원봉사자	51명	9명 증가

기 관 전 경	
------------	--

[조직도]



7. 화재·영업·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현황

■ 영업·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상호명 : KB금융그룹
- 상품명 :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 보장기간 : 2023. 11. 16 ~ 2038. 11. 16
- 기타 : 가스사고 포함

■ 화재보험

- 상호명 : 삼광신협
- 상품명 : 주택화재공제
- 보장기간 : 2025. 11. 1 ~ 2028. 11. 1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 상호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상품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보장기간 : 2025. 10. 25 ~ 2038. 11. 16

■ 종사자 상해보험

- 상호명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보장기간 : 2025. 04. 01 ~ 2026. 03. 31

8.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정기)

장 기 요 양 기 관 명	노티나무	장 기 요 양 기 관 기 호	14518000078
급 여 종 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 표 자	최갑동
평 가 년 도	2021	평 가 등 급	정기평가 B(우수)

구 분	총 점	기관운영	환경및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	제공결과	가점
환산점수 (배점비중)	100.00	15.00	28.00	12.00	35.00	10.00	
점 수	89.78	14.46	27.25	11.00	28.37	8.70	
전체평균	73.13	10.23	24.25	7.68	22.60	8.34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 가산지급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가산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 수시평가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 별도가점 : 재가급여 평가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정책참여도 (가점) 지표로 평가 점수에 합산됨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제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 ※ 제출방법 : ① 방문, 우편, 팩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지 제32호 서식)
②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2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 B (우수)

급여종류 : 시설급여

○ 대분류 영역별 수준

대분류영역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별 개수	★★★★★	★★★★★	★★★★★	★★★★☆	★★★★☆
점수	96점	97점	91점	81점	87점

- ▶ 별개수 : 환산점수 40점부터 50점 미만까지는 0.5개(★☆☆☆☆)부여, 50점부터 90점까지는 5점 간격으로 최대 5개(★★★★★) 부여, 40점 미만은 별개수는 표시하지 않고 환산점수만 표시
- ▶ 점수 : 대분류별 점수에 환산점수(배점비중)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소수점이하 표기하지 않음)

느티나무

2026

1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 구분

신체

인지

여가

주3회

주3회

주2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물리치료 서비스		에어마사지				에어마사지
12/28	12/29	12/30	12/31	1	2	3
건강체조 또는 인지재활 프로그램(학습지형) 주 3회 이상 제공						
	노래교실	다섯 손가락 놀이	칠교놀이	컵타놀이	음식만들기	
4	5	6	7	8	9	10
건강체조 또는 인지재활 프로그램(학습지형) 주 3회 이상 제공						
	노래교실	짜꿍 놀이	장구놀이	색칠하기	음식만들기	
11	12	13	14	15	16	17
건강체조 또는 인지재활 프로그램(학습지형) 주 3회 이상 제공						
	노래교실	다섯 손가락 놀이	컵타놀이	탁구공 놀이	음식만들기	
18	19	20	21	22	23	27
건강체조 또는 인지재활 프로그램(학습지형) 주 3회 이상 제공						
	노래교실	짜꿍 놀이	윷놀이	보드게임	음식만들기	
25	26	27	28	29	30	31
건강체조 또는 인지재활 프로그램(학습지형) 주 3회 이상 제공						
	노래교실	다섯 손가락 놀이	칠교놀이	퍼즐맞추기	음식만들기	